

1. 개정이유

대국민 규제개선 의 일환으로 비행검사 사전 신청기간의 단축과 불특정 기관과의 협의 조항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비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사전 신청기간을 당초 1개월(30일)에서 14일로 단축 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비행검사 요청서 항목의 불특정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삭제(안 제4조제4항제5호)
- 다.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따라 법령 위임 행정규칙의 재검토 기한 연장(안 제1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부고시 제 호

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

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본문 중 “1개월”을 “14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한다.

제17조 중 “2018년 7월 1일”을 “2024년 1월 1일”로, “6월 30일”을 “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설의 비행검사를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비행검사 예정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비행검사 요청서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비행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, 센터장은 비행검사 일정, 승무원 상태,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장비 상태 등을 검토하여 비행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긴급한 사항으로서 센터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관계기관과의 협의 완료 여부

6. ~ 8. (생략)

⑤ ~ ⑦ (생략)

제17조(재검토기한) 국토교통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5. ~ 7. (현행 제6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)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재검토기한) -----

----- 2024년 1월 1일 -----

----- 12월 31일 -----

